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 (의안번호 제72호)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〉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제72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제출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❍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. 10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**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**을 하고자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제8조(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)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위탁시설개요

- 시 설 명 : 서산육아종합지원센터

- 위　　치 : 서산시 석림1로 81 (석림동)
- 수 탁 자 : (재) 서산시복지재단 (이사장 김원균)
- 위탁기간 : 2021. 11. 1 ~ 2026. 10. 31.(5년)
- 위탁시설규모 : 지상3층 / 1,638㎡
- 위탁시설현황

구 분	면적(㎡)	내　　용
1층	545.35	시간제 보육실, 수면실, 상담실, 의무실, 임산부 휴게실, 영아·유아 놀이터, 장난감 보관실 등
2층	545.35	프로그램 체험실, 장난감 보관실, 육아 북카페, 놀이 체험실, 용역원실 등
3층	548.29	사무실, 센터장실, 세미나실, 공연장 등

○ 위탁추진계획

- 위탁사무 :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
- 위탁예산 : 금942,947천원(시 100%)

(단위 : 천원)

총 계	인건비	사무운영비	활성화 사업비
942,947천원	515,170	147,679	280,098

- 위탁기간 : 2026. 11. 1 ~ 2031. 10. 31.(5년)
- 선정방법 : 서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(위원 8명)
  (보육전문가,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·보호자, 공익대표로 구성)
- 심의결과 : 심의 결과 94.5점으로 재위탁 적정 심의 의결

❍ 위탁사무내용

- 시설의 사용 및 유지, 안전관리
-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
-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·제공
-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
-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·상담·치료연계 지원
-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
-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
-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
-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Ⅲ. 검토의견

1. 제안목적

○ 본 동의안은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. 10. 31.일로 만료됨에 따라, 그 동안 센터를 운영해 온 (재)서산시복지재단의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재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 향후 5년간 센터의 관리·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근거

-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 제1항에서 시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

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「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에서는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, 제1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같은 조례 제17조에서는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도록 하고,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,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되, 업무실적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《영유아보육법 》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《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》

제14조(설치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,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.

제16조(운영)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나. 민간 위탁 사무의 적정성

- 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는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면서 전문지식·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시설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무 등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, 어린이집·보호자·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·교육·컨설팅 및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로 판단됨

《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》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

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
제5조(위탁 대상사무)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・장애인・여성・**아동**・ 청소년・노숙인 등 **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**

다.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

-「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제17조 제1항은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업무실적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94.5점으로 재위탁 적정 의결을 받아 재위탁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위탁기간 역시 조례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

《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》

제17조(운영의 위탁) ①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, 수탁내용, 선정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② 위탁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
3.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

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
Ⅲ. 종합검토

가. 본 동의안은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

나.「영유아보육법」「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」및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에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다. 또한「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」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동의안의 취지와 일치함

라.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, 어린이집·보호자·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

담·교육·컨설팅 및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마.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